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129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박세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이진우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3. 8. 24. 접수 제416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8.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원고, D, A(E생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동생이다. 이하 ‘A’이라고만 한다), F이 있다.

나. 2023. 8. 24. 원고와 피고, D, A, F 명의로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3.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면서 원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91947 판결 참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아닌 피고와 D에 의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고, 피고로서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와 D이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3. 8. 18. H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의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가 2023. 8. 24. 관할등기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관련서류로 제출되었다.

② 원고는 2023. 8. 17.경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피고로부터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후 은행 업무를 마치고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장례식을 마친 다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2023. 8. 21. G은행에서 주상속인(소득귀속자)을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 및 이자소득 귀속 동의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원고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G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에 서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은행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은행 업무를 마친 직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함께 갈 것인가에 관하여 문자, 원고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와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피고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A의 자녀인 I이 2023. 8. 2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관련서류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D, F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주민등록등·초본에는 그 용도 및 목적이 상속명의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위 ① 내지 ③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2023. 8. 17. 내지 같은 달 18.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망인의 장례식 기간 중에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장례식이 끝난 후 곧바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별도로 문서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피고나 D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⑥ 원고는 피고와의 상속관계에 있어 이복형제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또한 피고의 자녀로서 D, A, F과 같은 순위로 피고를 공동상속하는 지위에 있으므로(피고는 2024. 5. 2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의 자녀 관계를 다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과 특별히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별지